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6
----------	------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27일

발 의 자 : 김광수(도봉) · 문영민 · 김기대
김창수 · 김혜련 · 박기열
이윤희 · 우창윤 · 이숙자
김제리 의원(10명)

1. 제안 이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을 통해 안전의 심의나 질문을 위하여 시장 및 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공무원 등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원활한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징계를 의회의 의결로서 시장 및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골자

가.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는 의결로서 해당 관계공무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9조제5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회는 의결로 해당 관계공무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의회는 의결로 해당 관계공무원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u>